

최근 본사에 배당을 한 중국 회사는 본 판결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중국 자회사가 납부한 배당에 대해 본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1. 개요

중국 자회사의 한국 본사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최근 중요한 판결이 나와서 알려 드립니다. 우선은 관리 담당자께서 이해하시기 편하게 간단하게만 설명 드립니다.

중국 자회사가 본사에 배당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5%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한·중 조세협정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서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 중국에 납부된 세액을 10%로 간주한다”는 간주 규정이 있어 한국 모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때 5%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간주규정에 따라 10%가 적용이 되느냐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4. 10. 15. (2014 두 38019)판결을 통해 10%가 적용됨을 인정하였는바 즉,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판결 내용 간단 요약

<p>사례 (중국의 경우)</p>	<p>중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과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기업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 과세 ➢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실시조례 제91조에서 10% 세액 면제(감면) ➢ 한·중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 5% <p>한·중 조세협정 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서 “배당/이자/사용료의 경우 중국에 납부된 세액을 10%로 간주한다”고 규정 (간주 규정)</p>
<p>납세자 주장</p>	<p>제 2 의정서 제 5 조 제 1 항 후문에서 제한세율과 관계없이 중국에 납부한 세액이 10% 간주되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 제한세율 5%로 과세 당하는 경우 <p>간주세율 10%와 차액인 5%의 세액은 한국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p>

과세관청 주장	<p>중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소득세는 제한세율인 5%가 적용되므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한국에서 공제될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률이 제한세율인 5% 세액보다 더 경감하는 규정을 두어야만, <p>그 차액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임</p>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요약	<p>1. 간주규정의 취지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중국 내의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세액공제 대상 조세를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p> <p>2.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5% 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10%로 간주한다는 것임</p> <p>따라서 간주세액 10%와 실제 납부세액 5%의 차액 5%의 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p>

3. 무엇을 할 것인가?

혹시 최근 한국에 배당을 한 적이 있다면 본 내용을 한국의 세무 담당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제 받지 못했던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보가 빠른 본사 세무 담당직원 분들은 상당수가 본 내용을 입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이슈는 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중국 현지 담당자가 특별히 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있었음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한 이를 본사에 알려준다면 (아직 본 판결을 몰랐던 담당자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쉽게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또한 과세당국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딜로이트는 한국에도 우수한 세무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본사의 문의가 있으면 저에게 우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